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 90 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345CH9418(CH941)(일반),K55345CH9426(CH942)(종류 A),  
K55345CH9434(CH943)(종류 F))

2018.11.30 제정

2019.09.16 개정

2023.06.01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집합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라 한다)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취득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폐쇄형”이라 함은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 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06.01>
  8.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 9 조 제 19 항 제 2 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06.01>
  10.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1. “협회”라 함은 법 제 283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 90 호"이라 한다. <개정 2023.06.01>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폐쇄형
3. 단위형
4. 종류형
5. 사모형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3.06.01>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종류 F 수익증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제 2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일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23.06.01>

제 3 조의 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3.06.01>

1. 전문투자자로서 법 시행령 제 27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2021 년 2 월 9 일 이후: 3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 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개정 2023.06.01>

제 3 조의 3(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1>

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 17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6.01>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06.01>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06.01>

③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관련 법령과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제 37 조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 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제 16 조에 의한 해외 부동산(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가 발행하는 이익참가부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을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중도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중도상환일까지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5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500,000,000,000 좌(오천억좌)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이 신탁계약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추가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1.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2.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때
3.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기존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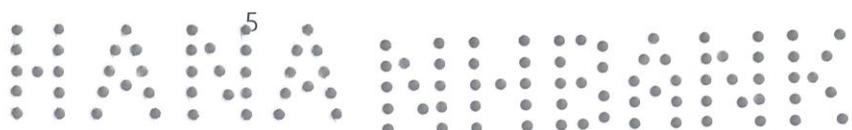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3.06.01>

##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개정 2019.09.16>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16>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F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6>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개정 2019.09.16>

③ 삭제 < 2019.09.16>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09.16>

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2019.09.16>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2019.09.16>

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절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09.16> 다만, 수익자는 법

제 249 조의 2 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09.16>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 양도시 양수인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개정 2019.09.16>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제 4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16>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개정 2019.09.16>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개정 2019.09.16>

⑥ 제 5 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6>

⑦ 삭제 < 2019.09.16>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6.01>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시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1>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서 해외 부동산(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가 발행하는 이익참가부사채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제 1 항의 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의 이익참가부사채 외에 기타 국내외 채권,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예금, 외화자산가치 변동 위험의 헤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 매입거래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대기자금, 이익금 등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 (법 제 249 조의 13 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개정 2023.06.01>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라. 그 밖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의 환매조건 부 매도 또는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 시 그 매도금액 총액 <신설 2023.06.01>

3.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6.01>

4.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17 조의 2 (자금의 차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금의 규모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을 법 제 229 조제 2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 17 조의 3(부동산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6.01>

####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8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9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삭제> <개정 2023.06.01>

제 19 조의 2(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47 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② 신탁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요구를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본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 5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6.01>

##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9.09.16>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단,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6.01>

1.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총수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 총수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신설 2023.06.01>

제 21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2 조(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해당사항 없음

## 제 6 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4 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4 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23.06.01>

②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한다.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 26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의 최초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를 제 1기로하고 이후 매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 27 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개정 2023.06.01>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신설 2023.06.01>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26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6.01>

1. 정기결산 회계기간의 말일 <신설 2023.06.01>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신설 2023.06.01>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항제 3호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06.01>

제 28 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5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또한, 투자신탁재산 중 보유현금을 고려하여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다만, 법 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28 조의 2(임시결산에 의한 분배) 제 28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제 16 조의 투자대상에 투자한 자금의 원금 또는 이익의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된 금액을 임시결산 또는 일부해지의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일부해지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당해 이익초과분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회사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제 30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중도상환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제 16 조의 투자대상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중도상환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및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28 조,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이익초과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33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조의8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의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06.01>

##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4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매입보수, 매각기본보수, 매각성과보수

2. 다음 각목의 기본보수

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다.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 26 조에 의한 매 회계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기본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개정 2023.06.01>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③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설정원본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에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가 투자하는  
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 매입금액 (¥4,400,000,000(JPY),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  
제외)을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설정원본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적용환율은 투자시점에 체결되는 환헤지  
계약서상의 교환환율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1.5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2.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2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15

2. 종류 F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1.5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15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2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15

④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보수의 금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보수 : 금오억원(₩5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방법 : 투자신탁 설정 후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가 투자하는 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⑤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부동산투자목적회사 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SPC)가 투자하는 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보수율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각기본보수는 신탁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차액[매각차액=(부동산 매각대금 - 일본 현지 매각비용) - (매입금액+ 매입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매각차익(매각차익 = 매각차액 - 매각기본보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성과보수를 지급한다.

1. 매각기본보수: 부동산(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 매각대금의 0.5% (부동산 매각대금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각기본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한다.)

2. 매각성과보수: 부동산(일본 부동산신탁 수익권) 매각차익의 10% (매각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한다.)

3. 지급방법: 제 1 호 및 제 2 호의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 해지 전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집합투자업자가 매각기본보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국내 에서 발생하는 매각부대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⑥ 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은 다음과 같다. 단, 담당 투자운용인력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1. 투자운용인력의 운용현황 및 경력 <개정 2023.06.01>

(기준일: 2022.12.1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정해성	1967	부문장/ 부사장	27	1조 4,902억원	1995.05~2001.07 2001.08~2006.10 2006.11~2010.02 2010.03~2012.03 2012.04~ 현재	CBRE Korea JLL Korea 신영에셋 H&S real estate management LLC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개정 2023.06.01>

(기준일: 2022.12.19)

펀드명	설정일	설정일 이후 연환산 수익률
하나대체투자랜드칩판교사모부동산투자신탁57호	2014.04.15	4.6%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	2015.02.13	4.8%
하나대체투자랜드칩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11.12.29	-0.47%
하나대체투자QWL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0호	2014.12.29	-0.78%
하나대체투자QW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2016.06.17	-0.1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전문)	2018.08.31	0.4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3호(전문)	2019.06.27	0.3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29호(전문)	2019.10.31	0.25%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35호(전문)	2020.03.31	0.56%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70호(전문)	2021.06.23	-0.05%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투자운용부문 투자운용 1 팀에서 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제 운용으로 상기 운용인력의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의 2(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종류 A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판매회사는 종류 F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금융자문, 세무자문, 사업성평가, 시장분석, 모형도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제 17 조의 3 부동산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3. 차입금의 이자 및 자금 차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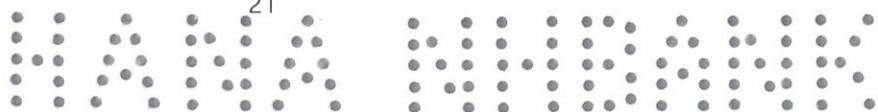
4. 부동산 및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8.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9.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신설 2023.06.01>
10.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개정 2023.06.01>
11.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개정 2023.06.01>
1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개정 2023.06.01>
13.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비용 <개정 2023.06.01>
14. 매각을 위한 경매 관련 제반비용 (경매 활성화 비용 포함) <개정 2023.06.01>
15.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06.01>

③ 제 5 조 및 본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해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발생시 해지 전 업무를 수행했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 등이 추가발생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한다.

##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36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 37 조 제 2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37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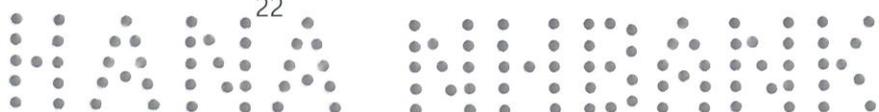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38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서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 249 조의 9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 39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8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 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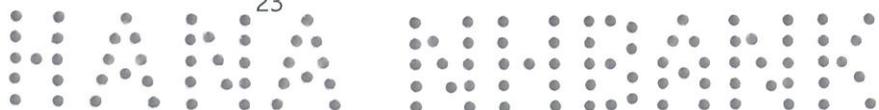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38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 10 장 보칙

제 40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개정 2023.06.01>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개정 2023.06.01>

제 41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42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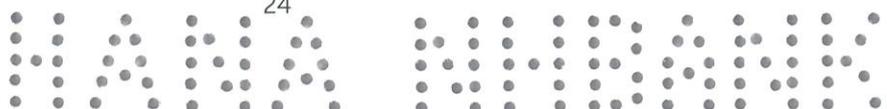
제 43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44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5 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11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후 승 (인)



신탁업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은행장 이 석 용 (인)

